

24

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 재산세 감면기간 설정 등(법 §75의2)

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</p> <p>○ (감면대상) 기업도시개발구역 内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</p> <p>○ (감면율) 취득세·재산세 50%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적용</p> <p>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</p> <p>〈신 설〉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재산세 감면기간 설정 및 감면연장</p> <p>○ 좌동</p> <p>○ (취득세) 좌동</p> <p>○ (재산세) 납세의무가 <u>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50%</u> <u>범위에서, 그 다음 3년간 25%</u>의 <u>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적용</u> ※ 조례 연계 개정 必</p> <p>○ <u>2028.12.31.</u></p> <p>○ (창업의 범위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제10항 준용</p>

□ 개정내용

-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되, 재산세 감면기간 최대 8년 설정(최초 5년간 50%, 그 다음 3년간 25% 조례 감면 可)
- 국세*와 동일하게 창업의 범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준용 규정 신설

*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17